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일자 : 2007. 8. 31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구·군에 아동위원을 배치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아동위원의 위촉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아동위원의 임기 및 역할(안 제3조 및 제6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즉시, 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 또는 해당 동에 알림
-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상호 협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후견인 등

나. 아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8조 및 제9조)

-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7. 7. 10. ~ 7. 30.(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 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제3조(위원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즉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부서 또는 해당 동에 알림
2.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과 지도를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상호 협조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5. 가정위탁 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6.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처리
- ② 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의 정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배치) 위원은 동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의 인구수와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